

9. 법 제32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등에 관한 사무
 10. 법 제38조에 따른 책임보험계약등의 계약 종료일 통지 등에 관한 사무
 - 10의2.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
 - 10의3.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정지에 관한 사무
 - 10의4. 법 제47조의2제3항에 따른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무
 11. 법 제51조의4 및 제51조의5에 따른 공제조합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 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
 12. 삭제 <2014. 11. 28.>
 13. 법 제51조의9에 따른 공제조합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에 관한 사무
 - 13의2. 법 제56조 단서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에 관한 사무
 14. 법 제59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교육 등에 관한 사무
- ② 연합회 또는 법 제51조의2에 따른 공제조합은 법 제51조 또는 제51조의6에 따른 공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,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 <신설 2014. 11. 28.>

[본조신설 2012. 4. 20.]

[시행일: 2026. 1. 1.] 제15조의2

제15조의3(규제의 재검토)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. <개정 2025. 10. 28.>

1. 제4조에 따른 운임 및 요금의 신고 대상
2. 제4조의18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의 제한 기간
3. 제5조 및 별표 1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, 사업정지처분 또는 감차 조치 명령의 기준

[본조신설 2022. 3. 8.]

제16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. 이 경우 별표 5 제2호자목2)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24. 12. 17.>

[전문개정 2011. 12. 13.]

부칙 <제35832호, 2025. 10. 28.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4조의2부터 제4조의7까지, 제4조의10부터 제4조의15까지, 제4조의18, 제4조의19, 제15조제5항, 제15조의3제2호 및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4조의11제1항제11호나목 중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」 제4조의7제1항을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」 제4조의15제1항으로 한다.